

참고**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 내용****1****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규정 마련(2015. 8.11 개정)****①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(영 제115조의3 제1항 신설)**

- (현 황) 현재 위반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
- (개 정) 위반내용을 세분화(건폐율·용적률 초과,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)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(조례로 60/100 범위까지 완화 가능)

위반 내용	현 행	개 정
건폐율 초과	· 건축물 시가표준액 × 50/100 × 위반면적	· 건축물 시가표준액 × 50/100 × 위반면적 × 80/100
용적률 초과		· 건축물 시가표준액 × 50/100 × 위반면적 × 90/100
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		· 건축물 시가표준액 × 50/100 × 위반면적 × 100/100
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· 건축물 시가표준액 × 50/100 × 위반면적 × 70/100

* 시가표준액이 200만원/㎡인 지역에서 10㎡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,000 만원이나,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

②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(영 제115조의3 제2항 신설)

- (현 황)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
- (개 정)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, 증축한 면적이 50㎡를 초과하거나 5가구(세대) 이상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,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함

*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가중할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<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관련 유사법령 사례 >
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 -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부과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 -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

3] 이행강제금 감경 (영 제115조의4 신설)

- (현 황) 위반 동기,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
- (개 정) 이행강제금 감경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, 소규모 위반(위반면적 30㎡이하)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,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(다만,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경대상에서 제외)
- *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,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<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관련 유사법령 사례 >

-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
 - 위반동기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 부과

2 국민불편 건축규제 기준 개선 등

4] 책임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건축허가 사무위임(영 제117 개정)

- (현 황)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읍면동 도입('15.4) 되었으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없음